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1-115호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 공고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다음과 같이 운전직 공무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년 11월 26일

국무조정실장

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지원코드	임용직급	인원	임용기간	근무예정부서 (근무지)
운전A	운전서기보	1명	국가공무원법상 정년적용	국무총리비서실 정무기획비서관실 (세종)
운전B	운전서기보	1명	국가공무원법상 정년적용	국무총리비서실 정무기획비서관실 (서울)

※ 운전A(근무지: 세종)과 운전B(근무지: 서울) 중 하나의 지원코드만 응시 가능 (중복 응시불가)

2. 주요직무내용

채용분야	주요 담당업무
운전	○ 업무용 차량 운전 및 관리(일상점검, 운행관리 등) ○ 기관 주최 행사 운영 지원 등 ○ 기타 행정업무 지원 등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8237호, 2021. 6. 8.)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101호, 2020. 9. 22.)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05호, 2020. 10. 21.)

4. 채용자격요건

① 기본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4 12. 31. 이전 출생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

② 응시자격요건 : **[별지 1호] 직무기술서(응시자격요건) 참조**

응시 자격 요건

-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운전면허는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하며, 면허정지 중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응시 불가

③ 우대요건 : **[별지 1호] 직무기술서(우대요건) 참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우대 요건

- 1종 대형면허 취득 후 운전직 근무경력(연차별 차등우대)
- 무사고·교통법규 준수 이력 (사고 또는 위반 건수별 불이익)
- 자동차 정비·검사 관련 자격증 (자격증 등급별 차등우대)
-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 이수 (이수 건수별 차등우대)

- **경 력 (1종 대형면허 취득 후 경력만 인정)**

- '경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사업자등록업체**에서 **운전직**으로서 **승용차 또는 승합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으로,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해 인정**

* **영업(판매)직** 및 단순 현장근무 기술직으로 근무한 경력, 응시자 본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력, **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 경력은 제외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연월일)·상근여부·담당업무·운행차종(인승)**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내용이 누락되는 등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경력 불인정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 군 경력의 경우, 운전 관련 주특기자로 인원수송을 위해 승용차 또는 승합차를 운전한 경력*이 '군 운전경력확인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 증빙된 경우에 한해 인정(보병, 포병 등 다른 병과 경력은 근무경력으로 불인정) * 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 경력은 제외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폐업사실증명서·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증빙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해 경력을 증명해야 경력 인정

○ 무사고·교통법규 준수 이력

- 무사고·교통법규 준수 이력은 **공고일 이후**(원서접수마감일 전까지)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를 기준(운전면허경력, 법규 위반 등 모두 전체 경력으로 발급)으로 인정하며, **사고 및 위반 건수별 불이익. 운전경력증명서 미제출시 해당 항목 최대 감점 처리**

* 공고일 이전 발급된 운전경력증명서, 조회기간이 전체가 아닌 운전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 항목 최대 감점 처리

○ 자격증

- 자동차 정비·검사 관련 자격증*은 국내 국가기술자격증에 한해 등급별 차등 인정하며 복수 소지 시 상위 등급 1개만 인정
- * 관련 자격증: 차량기술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舊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포함)

○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

-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은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 해당하는 실적에 한해** 이수 건수 별 차등 우대 (유효기간 불명료시 교육 이수 불인정)

5. 시험방법

① 1차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공고된 채용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때에는 아래 서류 심사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로 결정 가능

※ 서류심사 기준 :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관련 분야 근무경력, 무사고이력 등

②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6.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모집공고	'21.11.26.(금)~'21.12.6.(월)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원서접수	'21.12.2.(목)~'21.12.6.(월)	▪ 국무조정실 인사과 채용담당자(우편, 방문)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2.1.7.(금) 예정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게시
면접심사	'22.1.12.(수) 예정	▪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별도 상세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22.1.20.(목) 예정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게시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확산추세, 응시인원, 우리실 사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일정 변경 및 합격자 발표 등은 기관 홈페이지(<http://www.opm.go.kr>)의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1.12.2.(목) ~ '21.12.6.(월), 09:00 ~ 18:00

※ 접수번호(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메일로 개별 통보 예정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12:00 ~ 13:00 제외) 내에만 가능하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방문접수 지양

-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며, 봉투 겉면에 "응시분야 및 직급" 기재
-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처 : 국무조정실 인사과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1동 313호
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실 인사과 채용담당자

- (우편번호) 30107

○ 응시표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당일 배부

8. 제출서류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공통사항 : 필수 제출 >

-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2호 서식>
 - ※ 정부수입인지(5,000원) 첨부
 -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② 이력서 1부 <별지 3호 서식>
 - ※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하되, 증빙서류 첨부 시에만 인정됨을 유의
-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4호 서식>
 - ※ A4 2매 이내로 작성(형식·구성은 자유)
-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5호 서식>
 - ※ A4 2매 이내로 작성(형식·구성은 자유)
- ⑤ 1종 대형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 ⑥ 운전경력증명서 1부
 - ※ **공고일 이후** 경찰서 및 민원24에서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 ※ 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 : **전체기간 조회**
 - ※ 공고일 이전 발행분 제출, 일부기간만 조회한 자료 제출, 자료 미제출 시 해당 항목 최대 감점 처리
-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 ⑧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 개별사항 : 해당자만 제출 >

- ①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 <별지 8호 서식>
 - ※ 증명서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 ※ 근무기간(연월일), 직위, 담당업무, 운행차종(인승), 상근여부 반드시 기재
 - ※ 비상근 근무시 주당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 (예: 주당 30시간)
 -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하단에 별도 기재 가능)
 - ※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제출(권고)
 - ※ 재직증명서 제출 시, 경력기간 산정(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③ 자동차 정비·검사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취득증빙 사본 1부
- ④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수료증상 유효기간 명시)
- ⑤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만 병역사항 기재된 것으로 제출)

9. 유의사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경력, 자격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으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미비,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가능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청구서(별지서식 9호)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원본서류를 반환해 드립니다.
 - ※ 메일주소 : opminsa@korea.kr
 -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22. 1. 20.(목)~'22. 1. 27.(목)
- 응시인원이 없거나 채용 예정인원과 동일한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할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서류심사 합격자의 경우 4대 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 득실 내역,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통해 경력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변경공고 할 예정입니다.
-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책정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국무조정실 인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담당자 : 044-200-2801, 044-200-2802)

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직무분야	임용예정기관	근무부서	담당예정업무	임용예정직급	임용예정인원
운전	국무총리비서실	정무기획비서관실	업무용 차량 운전 및 관리 등	운전서기보	2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용 차량 운전 및 관리(일상점검, 운행관리 등) ○ 기관 주최 행사 운영 지원 등 ○ 기타 행정업무 지원 등
-------------	--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	--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관련 법규 및 도로체계에 관한 지식 ○ 차량운행 및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기초 지식 ○ 행정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활용 기초 지식
-------------	---

응시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종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종대형 취득 후 운전직 근무경력 ○ 무사고·교통법규 준수 이력 (사고 또는 위반 건수별 불이익) ○ 자동차 정비·검사 관련 자격증 (자격증 등급별 차등우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head> <tr> <th style="width: 16.6%;">평가등급</th> <th style="width: 16.6%;">최상</th> <th style="width: 16.6%;">상</th> <th style="width: 16.6%;">중</th> <th style="width: 16.6%;">하</th> <th style="width: 16.6%;">최하</th> </tr> </thead> <tbody> <tr> <td>자격증</td> <td>기술사</td> <td>기능장</td> <td>기사</td> <td>산업기사</td> <td>기능사</td> </tr> </tbody> </table> ○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 이수 (이수 건수별 차등우대) 	평가등급	최상	상	중	하	최하	자격증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평가등급	최상	상	중	하	최하								
자격증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지원코드) : **지원코드**는 **운전A**(근무지: 세종), **운전B**(근무지: 서울)
중 **택일하여 반드시 기재**
3. 응시기관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5.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
6.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7. 정부수입인지 : 우체국 또는 온라인으로 인지를 구입하여 첨부
 - ※ 온라인 구입처 : <http://www.e-revenuestamp.or.kr>
 - ※ 일반직 9급 : 5,000원
 -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 전자수입인지(A4 크기)는 응시원서 바로 다음 쪽에 첨부

응시자 제출서류

성 명	홍길동	응시직급 (지원코드)	운전서기보 (운전A / 운전B)
-----	-----	----------------	----------------------

□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제 출 서 류	작성 여부
1. 응시원서(필수) [별지 2호]	
2. 이력서(필수) [별지 3호]	
3. 자기소개서(필수) [별지 4호]	
4. 직무수행계획서(필수) [별지 5호]	
5. 1종 대형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필수)	
6. 운전경력증명서(필수)	
7.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별지 8호]	
8. 자동차 정비·검사 관련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9.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증(해당자에 한함)	
10. 주민등록 초본(남성 지원자만 제출, 병역 확인용)	
1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필수) [별지 6호]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필수) [별지 7호]	

- *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 란에 "○" 표시
- * 증명서 및 실적 등은 최근 이력부터 과거 이력순으로 순차 정리
-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되 제본이나 편철하지 말고
집게 또는 클립으로 집어 제출**

<별지 2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 년 월 일
국무조정실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지원코드)	운전서기보 (운전A / 운전B)		(한자)
생년월일	년 월 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5,000원)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응시번호		응시직급 (지원코드)	운전서기보 (운전A / 운전B)
성명	(한글)	(한자)	
2021년 월 일 국무조정실장 (인)			

주 의 사 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운전직 공무원 이력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지원 코드		성명	
* '운전A'와 '운전B' 중 택일하여 기재					

나. 응시자격				
자격 증	면허내용	면허증 번호	취득일	자격 검정기관
	제1종 자동차 운전면허(대형)			도로교통공단

다. 우대사항 (해당자만 작성 / 사고·법규 위반은 반드시 작성)					
근 무 경 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담당업무	운행차종(인승)	근무형태 (전일/시간)
		'00.00.00.~'00.00.00.			
자동차 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여부		분 류			건 수
		자동차 사고	유(), 무()		0 건
		교통법규 위반	유(), 무()		0 건
자 격 증	자격증명	자격번호	자격증 취득일	자격 검정기관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이수		교육명	교육일	교육기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성명 : (인)					

* 부분만 작성

* 경력 : 최근 경력이 위로 오도록 작성하고, 근무기간은 일까지 기재(예시: '13.01.01.~'16.07.29.)

* 사고 및 법규 위반여부는 반드시 기재

자 기 소 개 서

1. A4 2매 이내로 작성 (휴먼명조 13포인트 / 줄간격 160%)
2. 형식·구성은 자유
3.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

1. '직무수행계획서'는 A4 2매 이내로 작성
(휴먼명조 13포인트 / 줄간격 160%)
2. 형식·구성은 자유
3. 본인이 해당직위에 적합한 이유, 직무 관련 주요경력 및 역할,
직무 추진전략 및 수단 등 기술
4.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7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무조정실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경력사항* 등 <small>(*자격 및 경력의 경우, 관련 서류 제출자에 한함)</small>	공무원 채용 관리	5년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공직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공무원 채용 관리	5년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공직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범죄경력자료	공무원 채용 관리	5년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직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증, 경력사항 등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시험 실시기관이 조회 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월 일

성명

(서명)

개인정보처리기관장 귀하

경력(재직) 증명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업체명 (근무처)	직위 (직급)	담당업무 ①	운행차량 ②	근무형태 (전임/비전임) ③	비고 ④																
	부터	까지																						
	(예시) '12.6.30	'14.7.1	(주) 00	주임	기관장 차량 운행	승합 (대형, 00인승)	비전임 (주 30시간)																	
상별 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p>위와 같이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1년 월 일</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증명기관명 :</p> <p>주소 :</p> <p>전화번호 :</p> <p>사업자등록번호 :</p> <p>대표자 : (인)</p> </div> <div style="width: 45%;">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r><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발급자</td></tr> <tr><td style="width: 50%;">소속</td><td></td></tr> <tr><td>직위</td><td></td></tr> <tr><td>성명</td><td style="text-align: right;">(인)</td></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확인자</td></tr> <tr><td style="width: 50%;">소속</td><td></td></tr> <tr><td>직위</td><td></td></tr> <tr><td>성명</td><td style="text-align: right;">(인)</td></tr> </table> </div> </div>									발급자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인)
발급자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인)																							
<p>① 담당업무 : 기관장 차량 운행, 관광버스 운행, 행정업무 수행, 출퇴근버스 운행, 의전차량 운행, 행정 업무/통근버스운행 등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p> <p>② 운행차량 : 승용(대형), 승합(대형), 승합(중형), 화물(대형) 등 실제 운행 차량 기재 (예) 의전업무수행(승용중형), 통근버스운행(승용대형) 등</p> <p>③ 근무형태 : 전임/비전임 여부 구분 (비전임의 경우, 일주일 기준 근무 시간 기재)</p> <p>④ 비고 : 실제 운행차량 인승 기재</p>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경력증명서 발급 시스템 문제 등) 위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별지 9호> ※ 해당자만 작성 후 메일로 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무조정실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